



무엇을 위한 FTA인가?



2014.03.17 | 정태인_새사연 원장 | ctain60@gmail.com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에드 페스트 캐나다 통상장관과 함께 한·캐나다 FTA 타결을 선언했다. 두 나라 통상장관은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한·캐나다 FT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인정하고 축하한다” 며 “우리는 이 협정이 가급적 조속히 발효되는 데 서로 이해를 같이 하면서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¹⁾

TPP를 노려 농산물 강국들과의 FTA를 서두르다

한-캐나다 FTA가 협상 9년 만에 타결됐다. 참여정부 시절의 FTA 로드맵에는 한-캐나다 FTA는 원래 한미 FTA에 앞서 발효하기로 되어 있었다. 2002년의 로드맵은 거대선진경제와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었지만, 대국과의 FTA에 앞서 인근의 작은 나라와 먼저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

즉 미국과의 FTA 협상에 앞서 캐나다와, EU에 대해서는 EFTA²⁾,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 FTA를 맺어 그 결과를 보면서 강대국과의 FTA를 협상한다는 단계적 전략이었다.

1) 정부의 <보도 참고자료> 원문 참조 :

http://www.motie.go.kr/motie/ne/rt/press/bbs/bbsView.do?bbs_seq_n=78803&bbs_cd_n=16

2)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



실제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에, 한-EFTA FTA는 2006년 8월에 발효됐다. 그 결과가 한-중 FTA 협상이나 한-EU FTA 협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의

문이지만 어쨌든 원래의 전략대로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는 달랐다. 2005년, 가장 먼저 개시한 한-캐나다 FTA 협상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추진됐다.

한-캐나다 FTA는 2009년 4월, 캐나다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WTO에 한국을 제소함으로써 중지됐다가 최근 급진전되었다. 물론 정부가 TPP에 가입하려고 한-호주 FTA를 서두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였다. 현오석 부총리가 13일, 이미 발효되어 있는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별도로 동남아 개별국과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누차 얘기한 대로 TPP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구도를 뒤 흔드는 외교적 의미가 더 큰 협정이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 가입만을 위해 FTA 체결에 있어 필수적인 경제효과 분석도 없이 호주나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실제로 위에 링크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에는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이 없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발효 10년 뒤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말 타결된 한·호주 FTA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문서에서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보전 및 경쟁력강화 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도대체 TPP 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 평가도 없이, 별도의 농업 대책도 없이 FTA를 서두르는 이 정부에 전략이라는 게 있거나 한 걸까?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인 TPP에 가입하는 것이 그리 시급한 일일까? 그보다는 한중 FTA와 RCEP³⁾를 협력 위주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TPP에 요구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향 아닐까? 사연이 2012년에 제시한 아시아의 CEA(Cooperative Economic Agreement)가 바로 그런 유형의 협력협정이다.

3)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표1] FTA와 아시아 CEA의 비교

	USA type FTA	Asian CEA(Cooperative Economic Agreement)
목적	<p>기본적으로 FTA는 경쟁규범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결국 강대국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반영</p> <p>* FTA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미국형 FTA - 경쟁적 자유주의, 미국형 자본주의의 이식(미국적 가치의 확산)</p>	<p>CEA는 시장경제의 공정경쟁 확립, 전국네트워크들(특히 공공기관)이 초기에 참여하는 국제 공공재 건설, 그리고 사회경제의 유무상통 원리에 입각한 공정무역 및 교류 협력을 우선으로 함. 역내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목적</p> <p>* EU, 베네수엘라-쿠바 등의 민중연대협정, 메르코수르 등의 공동체형 경제협력협정의 아시아적 형태 - 동아시아의 호혜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경제체제 지향</p>
기준	<p>미국형 자본주의가 가장 우월한 사회경제형태, 즉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정</p>	<p>동아시아 어느 국가의 사회경제형태도 선형적으로 우월하지 않으며 동아시아의 협력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으로 가정</p>
금융 조항	<p>FTA의 금융조항은 완전한 자본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므로 현재의 금융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함. 아시아 통화체제의 출범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 농후</p>	<p>CEA는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치앙마이 협정을 확대/강화하는 아시아 통화협정을 지향. 장차 지역통화의 형성 가능성에도 대비</p>
분쟁 해결법	<p>투자자-국가 간 제소권 및 비위반 제소는 초국적 기업 및 강대국이 상대방 국가의 주권(사회권, 사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 다분</p>	<p>투자자의 이익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공공재 건설	<p>FTA는 정부조달 항목 등에서 알 수 있듯 공공사업의 발주에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p>	<p>CEA는 국제공공재(대륙 간 철도, 파이프라인 건설 등)건설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표준적 방식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p>
서비스 공급	<p>FTA는 교육(보육), 의료 등을 민영화, 외국 기업의 참여와 경쟁을 고취하나 역내 양극화 및 국내 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음.</p> <p>* 에너지 확보 경쟁 및 민영화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경 악화</p>	<p>CEA는 가치재 공급을 각국의 지역공동체 단위로 사회경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 교류 및 인력교류로 부족한 점 보충, 지역의 가치재 공급이 균등하게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p> <p>* 에너지의 공동개발과 이용, 대체 에너지 공동개발 등으로 환경 보호(특히 아시아 가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이 가장 중요한 목표)</p>
생산성 향상	<p>비교우위 원리에 입각, 시장 확대 및 경쟁 확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하지만 '아래로 향한 경쟁' 을 통해 각국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음.</p>	<p>공동체적 협력의 원리에 입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외부성, 근접 외부성에 근거하여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킴.</p>



산업 정책과 정책 공간	미국식 FTA는 산업정책의 정책공간을 가장 많이 제약하는 협정	CEA는 각국의 사회경제상황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각국이 고유의 산업정책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공간을 제약하지 않음
사회 문화 교류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별도의 항이 없음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므로 사회문화교류를 별도의 장으로 설정하여 평등과 연대라는 기초적 가치 외에 지역에 특수한 공동의 가치를 정립하는 데 주력 *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공동의 역사 기술, 청년, 학생의 교류에 의해 아시아 공동의 가치 창출에 주력 * CEA는 사회문화협력과 동시에 각국 사회문화의 고유성을 보호하고, 역내 사회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 설정 * CEA는 역내 교육을 최상위 가치 중 하나로 상정. 동아시아 공동의 대학교 등 설립
노동	FTA 노동 챗터는 기본권의 보장과 동시에 선진국 노동계급의 고용보장을 위한 성격	CEA의 노동챗터는 역내 각국 노동자의 기술교육 및 취업 보장 등 역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용을 포함
환경	FTA 환경챗터는 각국의 환경기준을 정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나프타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명무실화	CEA는 역내 환경보호의 기준을 강화하고 각국이 기준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환경보호의 인센티브 제공 * CEA는 역내 희귀생물의 종다양성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포함
기금 마련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국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 별 구조조정기금 마련(미국의 TAA,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 FTA는 역내 개발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음	역내 및 각국 내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기금을 각국의 경제규모에 비례하여 조성하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설적으로 협의 * CEA는 역내 저개발 지역의 개발을 위해 공동의 사업을 설정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기금 설립, 또는 역내 은행의 활용 *CEA는 역내 통화통합을 목표로 AMF, 역내 채권시장 설립을 주요한 목적으로 명시

출처 : 새사연, 2012, “리셋 코리아” , 북돋움



농업은 초토화, 자동차는 글썽, 개성과 ISD는 역시.

한-캐나다 FTA의 내용을 보면,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7.5%(수입액 기준 98.7%), 캐나다는 품목 수 기준 97.5%(수입액 기준 98.4%)를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한·미 FTA, 한·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쌀, 과실류 등 211개 품목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20개 품목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축산 강국인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 FTA를 맺었으니 한국 축산업은 초토화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FTA 체결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붙는 40%의 관세는 발효 15년이 되는 해에 완전 철폐되고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삼겹살은 13년, 나머지 부위는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FTA 협상을 발표할 때 마다 그렇듯 이번 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자동차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한국이 캐나다로 수출한 액수는 52억 달러인데, 22억 달러(42.8%)가 승용차이고 캐나다는 현재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수출하는 승용차에 6.1%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신문들은 환호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캐나다에 수출할 자동차 84만원 싸진다> 라고 달았고, <중앙일보>는 <자동차 캐나다 수출 2017년 무관세>, 동아일보는 <한-캐나다 FTA 타결...차 2017년 무관세 수출>이라는 제목을 내세웠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미국은 1994년에 캐나다와 나프타를 맺었고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한 지 오래다. 이미 미국에서 생산된 현대기아차는 캐나다로 수출할 때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기아차의 캐나다 판매차 중 44%(9만3015대, 지난해 기준)는 북미 현지 생산차이다. 물론 나머지 56%는 앞으로 혜택을 받겠지만, 이 물량은 현대·기아차 전 세계 판매량 대비 1.5%, 한국 공장 수출 물량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만일 해상 수송비용이 증가한다면 북미 공장에서 생산한 차가 캐나다로 수출되는 비중은 더 커질 것이다.



개성공단제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⁴⁾를 설립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페루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 중 일부 품목을 협정 발효와 동시에 곧장 한국산으로 인정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내가 2006년에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분야를 빼버리는 게 낫다고 주장했던 이유이다. EU나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미국만큼만 인정하겠다고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의 4대 독소조항은 한-캐나다 FTA에도 모두 포함됐다. 즉 투자자국가제소(ISD)⁵⁾, 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방식 개방⁶⁾, 서비스 현재유보의 래치조항⁷⁾, 미래의 MFN⁸⁾이 바로 그것이다. 은 모두 한 캐나다 FTA에도 포함됐다. 사실 제외한다 해도 별 다른 소득이 없다. 이미 한미 FTA에 맞춰 국내 제도를 재개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의 <보도자료>에서 이들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 및 규범 측면에서 WTO 플러스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제도 선진화 달성 가능” 하기 때문이란단.

중국 포위 전략인 TPP에 가입하기 위해 현재 TPP 회원국인 나라들과 서둘러서 FTA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동아시아의 격변 속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분야에서 이런 독소조항을 가득 안고도 진정 나라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

- 4) 역외가공이란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나 생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반제품을 해외로 가져가 가공한 다음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 5)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 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6)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한다. 즉, 리스트에 포함된 것 빼고는 모두 개방한다
- 7) 역진방지조항. 한 번 개방 또는 자유화한 부분의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 8)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가 조약을 새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에게 최혜국대우를 하면 그 조항은 한-캐나다 FTA에도 적용된다



2014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4년 3월 17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1/14	출산 포기는 불안한 미래에서 나온다	이은경
이슈진단	2/13	강화되는 경기회복세, 새로운 위기?	정태인
이슈진단	2/21	거대공룡 몸집 불리는 다섯 가지 방법	이은경
이슈진단	2/26	줄푸세의 군사적 집행	정태인
이슈진단	3/3	새사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강세진
이슈진단	3/17	무엇을 위한 FTA인가?	정태인